

협조전

안전보건팀 / 담당자 : 유장열 이사
TEL 031- 645-2251 / FAX (031) 758-0537

문서번호 : 안전보건팀 2023- 006호

시행일자 : 2023.02.22

수신 : 현장소장

참조 : 담당자

제목 : 스카이(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) 장비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

1.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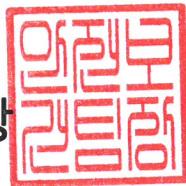
2.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스카이 장비에 대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전파 하오니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, 기본 방호장치 설치상태를 점검하는등 관리감독을 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

붙임: 1. 안전준수사항

2. 사고사례 . 끝.

안전보건팀장

SB 건설



스카이(고소작업차) 장비작업 단계별 준수사항

■.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

일반안전사항(고소작업대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조건, 작업방법, 안전점검 사항 등)을 검토하고, 고소작업대 선정시 고려사항(사용설명서 및 제원표 확인, 안전인증, 방호장치, 지반상태, 하중검토 등)을 사전에 확인

■ .장비 반입 및 설치:

작업 전 점검사항 및 고소작업대 설치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 차량위치를 먼저 선정하고 주위 고압선, 전신주, 가로수 등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장비는 평坦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아웃트리거를 확장 설치 이 때 수평계를 필히 확인.

■.작업 실시:

작업 중 안전수칙 및 장비작동 상태를 수시 확인 관리하며

작업반경 내 통제 관리 철저. 운전자는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한다든지 핸드폰을 보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대에 올라간 근로자는 생명줄 설치에 의한 안전대,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여부 확인

또한 눈, 비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무리한 작업 금지.

■.작업 종료: 작업 종료시 정리정돈 철저 지브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두고, 다음 작업을 위해 유압오일, 타이어 상태, 와이어 등 각 부위의 이상유무 점검

안전작업 일반사항

1.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,작업조건,작업방법,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 및 작업계획서 수립
2. 작업대 정격하중 절대 준수
3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 확인
4. 고소작업대 구조부 임의변경 금지 , 변형 및 균열 상태 확인
5. 고소작업대에는 작업자 탑승시켜 작업위치로 이동하는 용도 이외 사용금지하여야 하고 화물의 적재,하역, 운송을 목적으로 사용 금지
6. 작업 구역내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
7. 운전원 면허, 등록증 , 보험가입증명서 등 건설기계 ,장비 관련서류 확인
8.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실시

경사면에서 고소작업대차 운전 중 전도

재해개요	<p>운전원인 피해자가 경사지반에서 고소작업대차의 작업대·붐을 완전히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전도되면서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의 블과 지반사이에 협착·사망한 재해임.</p>
재해상황도	
안전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고소작업대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작업대의 블을 완전히 삽입하고 가장 낮게 하강한 상태에서 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에 고정 후 이동시켜야 하며, 고소작업대차의 작업 및 이동구간에는 사전에 지반의 수평상태 확인하여 수평유지 및 바닥에 요철이 없도록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.



전도된 고소작업대차



고소작업대 설치 지반상태(지반경사 9%)

교량 상판 슬래브 도장작업 중 고소작업대차 전도

재해형태	전 도	재해정도	사망1명, 부상2명
소재지	전남 여수시 율촌면	공사규모	총연장 10.357km
재해개요	도장공 2명이 고소작업대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교량 상판슬래브 외벽의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를 위한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대차가 전도되면서 하부에서 이동 중이던 배관공 1명 사망하고, 도장공 1명과 운전원 1명이 부상 당한 재해임.		

재해상황도



안전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소작업대차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반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인발하여 설치하고, 작업반경 내에는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함.
------	--



사고현장전경



파단된 아웃트리거